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가단506301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아크인트레이딩

변론 종결 2014. 11. 28.

판결 선고 2015. 1. 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60,579원 및 그 중 50,852,000원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4. 6. 26.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아크인트레이딩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주식회사 아크인트레이딩은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지급채권 10,016,491원에 관하여 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라.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제1회사'이라고 한다), 피고 B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1. 11. 14. 피고 제1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신용보증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는 피고 제1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보증서번호 : D

보증일 : 2011. 11. 14.

보증원금 : 50,000,000원

보증기한 : 2012. 11. 13. (2013. 11. 13.로 변경됨, 갑제1호증의 3)

대출과목 : 기업일반자금대출

대출은행 : 하나은행 대청역지점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제1회사가 원고의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 제1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제1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채채무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였고,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며, 피고 제1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이하 '대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제1회사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 제1회사로부터 원고가 보증한 채무 중 피고 제1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방법서 제7조 제1항 제1호의 이사회에서 정한 보증료율에 연율 1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도록 정하였다.

3) 피고 제1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를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출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구상채권의 발행

1) 피고 제1회사는 2013. 9. 23. 이자연체로 인하여 하나은행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1. 7. 하나은행에게 50,852,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의 구상채권 발생과 관련한 대지급금은 449,409원이고, 위약금은 59,170원이다.

다. 피고 B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 B는 2013. 6. 12.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아크인트레이딩(이하 '피고 제2회사'라고 한다)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제2회사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3. 6. 13. 접수 제7092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재산상태는 별지2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다.

3)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 전 2005. 10. 20. 채권최고액 28,08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소외 은행은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2014. 4. 8. 남양주시에게 83,460원을, 소외 은행에게 73,296,424원을, 피고 제2회사에게 10,016,491원을 배당하였다.

4) 원고는 2014.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 제2회사의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지방법원)에 대한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제1회사 및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제1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60,579원(대위변제금 50,852,000원 + 대지급금 449,409원 + 위약금 59,17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4. 6. 26.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제2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사후구상권이 2014. 1. 7.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2013. 6. 13. 체결된 사실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구상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2011. 11. 14. 체결되었고,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3. 8. 28. 카드론 연체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1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하여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는 등 신용보증사고를 3개월만에 일으켜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3. 8. 9. 소외 농협에 대위변제하여 사후구상권을 취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후구상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일반채권자들 중 특정 채권자인 피고 제2회사와 사이에서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제2회사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B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 제2회사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제2회사는 피고 제1회사에 대하여 2013. 2. 14. 현재 49,781,744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고, 피고 제1회사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3. 8. 차용금 49,781,744원, 피고 제1회사를 차용인, 피고 B를 연대보증인, 변제기 2013. 12. 말(10회 분할 지급)으로 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제1회사와 피고 B가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다 1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제2회사는 2012. 11.부터 2013. 1월 말까지 59,973,408원 상당의 물품(SUM GLASS)을 피고 제1회사에게 공급하고, 출고시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던 점, ② 그런데 피고 제1회사는 2013. 2. 14.까지 대금 중 49,973,408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③ 피고 제1회사가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 제1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피고 제1회사의 피고 제2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하여 2013. 3. 8. '2013. 3월 말부터 2013. 12까지 10회에 걸쳐 4,978,175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 제2회사에게 교부하였던 점, ④ 피고 B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내용대로 분할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6. 13.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2회사 역시 이 사건 계약 체결당시 피고 B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상태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다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제2회사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제2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제2회사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인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지급채권

10,016,491원에 관하여 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유랑

별지